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 939 호

2010년 9월10일 금요일

공 고

- 공고 제2010- 11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
조례(안) 입법예고 2

고 시

- 고시 제2010- 60호 통·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10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-1178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9월 9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,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지방세 : 인천광역시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
- 성실납세자 :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
-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
- 유공납세자 :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천만원, 개인 1천만원 이상인 자

○ 지원대상자(안 제3조)

- 성실납세자, 전자납세자, 유공납세자

○ 지원대상자 선정(안 제 4조)

- 성실납세자·전자납세자 :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천

- 유공납세자 :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참작하여 선정

○ 지원 범위 (안 제5조)

- 성실납세자·전자납세자 :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
- 유공납세자 : 1년간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,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,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1과 전화 : 032-453-2363, FAX : 032-453-241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4. 붙임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년 월 일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,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지방세 : 인천광역시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
- 성실납세자 :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
-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
- 유공납세자 :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천만원, 개인 1천만원 이상인 자

○ 지원대상자(안 제3조)

- 성실납세자, 전자납세자, 유공납세자

○ 지원대상자 선정(안 제 4조)

- 성실납세자·전자납세자 :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천
- 유공납세자 :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참작하여 선정

○ 지원 범위 (안 제5조)

- 성실납세자·전자납세자 :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
- 유공납세자 : 1년간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,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세기본법」
- 「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」
- 「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」
-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남동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, 납세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세”라 함은 인천광역시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를 말한다.
2. “성실납세자”라 함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(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)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3. “전자납세자”라 함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(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, 인천광역시지방세정보통신망, 인터넷 뱅킹, 텔레뱅킹, 자동이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 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4. “유공납세자”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,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자)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실납세자
2. 전자납세자
3. 유공납세자

제4조(지원대상자 선정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
1.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.
2.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, 전자납세자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.

3.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, 체납 유무,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.

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공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한다.

제5조(지원 등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,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

2. 제3조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

- 가.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제4호에 따른 1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
- 나.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면제

제6조(명부관리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, 전자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적사항, 지방세 납부액, 체납 유무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모범납세자”를 “모범납세자·유공납세자”로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유공납세자 증명서

번호 : 제 호

유효기간 : ~

성명(법인명) :

위 사람(법인)은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(인)

< 유공납세자 지원사항 >

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

(별지 제2호 서식)

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

[illegible]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-60호

통·반 구역조정 결정고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.

- 다 음 -

- 시 행 일 자 : 2010. 9. 20일부터 시행
-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 : “ 첨 부 ”

2010. 9. 10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논현동, 논현고잔동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

통 · 반 구역 조정현황

구 분	조정전		증감		조정후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논 현 동	35	222	1	5	36	227	주택,상가단지 입주
논현고잔동	36	240	2	12	38	252	푸르지오시티 입주

통 ·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

● 논현동

기존통명	조정사유 및 내역		조정결과
35통	○ 주택단지 및 상가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통반 분할 및 신설		1개통 ↑ 5개반 ↑
	○ 총괄내역		
	35통 4개 반(636세대)	⇒ - 35통 6개 반(459세대) - 36통 3개 반(177세대)	
	○ 상세내역		
	35통 1반	⇒ - 35통 1반 - 35통 2반	
	35통 2반	⇒ - 35통 3반 - 35통 4반 - 35통 5반 - 35통 6반	
	35통 3반	⇒ - 36통 1반	
	35통 4반	⇒ - 36통 2반 - 36통 3반	

● 논현고잔동

기존통명	조정사유 및 내역		조정결과	
28통	○ 세대수 과대 및 푸르지오시티 입주에 따른 통 분할		2개통 ↑ 12개반 ↑	
	○ 총괄내역			
	28통 7개 반 (558세대)	⇒		- 28통 7개 반 (262세대)
				- 37통 6개 반 (296세대)
				- 38통 6개 반 (524세대)
	○ 상세내역			
	28통 1반	⇒		- 28통 1반
	28통 2반			- 28통 2반
	28통 3반			- 28통 3반 - 28통 4반
	28통 4반			- 28통 5반 - 28통 6반 - 28통 7반
	28통 5반	⇒		- 37통 4반 - 37통 5반 일부 - 37통 6반
	28통 6반			- 37통 1반 - 37통 2반 - 37통 3반 일부
	28통 7반			- 37통 3반 - 37통 5반 - 38통 1반 ~ 6반

 통 · 반 조정 세부내역

 논현동

현행				조정 후				비고
통	반	관할 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 구역	세대수	(조정사유)
35	1	논현동 16블록 1~3롯데 17블록 1~7롯데/ 18블록 1~9롯데 19블록 1~16롯데 20블록 1~14롯데 논현동 594-1	147	35	1	논현동 16블록 1~3롯데 17블록 1~7롯데/ 18블록 1~9롯데	57	통반 신설 (논현2택지 개발지구 신설 입주 예정 주택 단지 및 상가단지)
		2			19블록 1~16롯데 20블록 1~14롯데 논현동 594-1	90		
	2	논현동 21블록 1~5롯데 22블록1~5롯데/ 23블록 1~8롯데 24블록 1~8롯데/ 25블록 1~8롯데 27블록 1~5롯데/ 28블록 1~8롯데 29블록 1~8롯데/ 30블록 1~4롯데 논현동 592-11~12/ 593-6~10/ 594-20,24,25	210		3	논현동 21블록 1~5롯데 22블록1~5롯데/ 23블록 1~8롯데	67	
					4	24블록 1~8롯데/ 25블록 1~8롯데, 논현동592-11~12	44	
					5	27블록 1~5롯데/ 28블록 1~8롯데	46	
					6	29블록 1~8롯데/ 30블록 1~4롯데 593-6~10/ 594-20,24,25	53	
	3	논현동 31블록 1~6롯데 32블록 1~8롯데/ 33블록 1~12롯데 34블록 1~3롯데/ 35블록 1~7롯데 논현동 605-1,13/ 606	67	36	1	논현동 31블록 1~6롯데 32블록 1~8롯데/ 33블록 1~12롯데 34블록 1~3롯데/ 35블록 1~7롯데 논현동 605-1,13/ 606	67	
					4	논현동 36블록 1~8롯데 37블록 1~4롯데/ 38블록 1~8롯데 39블록 1~7롯데/ 40블록 1~11롯데 41블록 1~8롯데 상17,상18 논현동 611-6~8/ 613-9	95	
3	40블록 1~11롯데/ 41블록 1~8롯데 상17,상18 논현동 611-6~8/ 613-9	40						

● 논현고잔동

현행				조정후				비고 (조정사유)
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
28	1	79블록, 80블록, 81블록, 82블록, 83블록, 84블록, 85블록, 86블록, 87블록, 논현동 582-7, 583-1	4	28	1	79블록, 80블록, 81블록, 82블록, 83블록, 84블록, 85블록, 86블록, 87블록, 논현동 582-7, 583-1	4	과대통 분할
	2	78블록, 88블록, 89블록, 90블록, 91블록, 92블록, 93블록, 94블록, 논현동 585-10, 586-1	6		2	78블록, 88블록, 89블록, 90블록, 91블록, 92블록, 93블록, 94블록, 논현동 585-10, 586-1	6	
	3	15블록, 69블록, 74블록, 75블록, 76블록, 77블록, 논현동 589-5, 588-1, 588-2	104		3	69블록, 75블록, 76블록, 77블록, 논현동 589-5, 588-1, 588-2	29	
	4	14블록, 67블록, 68블록, 70블록, 71블록, 72블록, 73블록, 논현동 590-17, 47	148		4	15블록, 74블록	75	
					5	72블록, 73블록, 논현동 590-46, 47	68	
					6	68블록, 70블록, 논현동 590-17	67	
					7	14블록, 67블록, 71블록	13	

현행				조정 후				비 고 (조정사유)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
28	5	3블록,8블록,9블록, 10블록,11블록, 12블록,13블록, 논현동 630	169	37	1	2블록, 6블록	49	통 신설
					2	4블록, 5블록	50	
					3	7블록, 상13, 상14	22	
	6	2블록,4블록,5블록, 6블록,7블록	117		4	3블록,9블록, 10블록	55	
					5	8블록,12블록, 상15, 상16, 상19	62	
					6	11블록,13블록, 논현동 630	58	
	7	상13, 상14, 상15, 상16, 상19, 상20, 논현동 650-2	10	38	1	650-1 푸르지오시티 1호 ~ 4호 라인	85	통 신설 (푸르지오 시티 입주 중)
					2	650-1 푸르지오시티 5호 ~ 8호 라인	89	
					3	650-1 푸르지오시티 9호 ~ 12호 라인	88	
					4	650-1 푸르지오시티 13호 ~ 16호 라인	87	
					5	650-1 푸르지오시티 17호 ~ 20호 라인	89	
					6	650-1 푸르지오시티 21호 ~ 24호 라인, 논현동 650-2	86	